

인 천 광 역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권고 발령

1. 관련문서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0347(2020.5.4.)호
- 나. 보건의료정책과-11687(2020, 5.13.)호
- 다.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-1508(2020, 5.14.)호
- 라.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-1675(2020. 5.19.)호
- 마.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-1697(2020. 5.20.)호
- 2.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(학원강사)의 접촉자 중 관내 중·고등학생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- 3. 이와 관련 아래 업종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,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오니,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대상(업종)

- 집합금지 조치 :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(코인노래방 포함)
-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: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PC방), 실내체육시설

나. 기간 및 내용

행정명령	유형별	기 간	내 용		
집합금지 조치 발령	유흥주점및 콜라텍	(연장)20. 5. 24. ~ 6. 7. (*단 시간은 20. 5. 24. 20시 ~ 6. 7. 24시까지)	-대상 :클럽, 룸살롱, 노래클럽, 스탠드바, 캬바레, 콜라텍		
	단란주점	20. 5. 25 ~ 6. 7.	- 대상 : 단란주점		
	노래연습장 (코인노래방 포함)	(변경 및 연장) 20. 5. 25. ~ 6. 7.	- 대상 : 노래연습장(코인노래방 포함) - 내용 ·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·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		

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	학원	(연장)20. 5. 25 ~ 6. 7.	- 대상 : 관내 학원
	PC방	(연장)20. 5. 25 ~ 6. 7.	- 대상 :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(PC방)
	실내 체육 시설	(연장)20. 5. 25 ~ 6. 7.	- 대상 : 실내체육시설 (체육도장, 체력단련장, 무도장, 무도학원)
	노래연습장	(연장)20. 5. 25 ~ 6. 7.	- 대상 : 노래연습장 (*코인노래방,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제외)

다.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붙임 1. 집합금지 조치,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1부.

2.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1부. 끝.

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

수신자 군·구, 시본청, 사업소



지방보건주사 안선영	지방행정사무 관	유재열	담당관	김혜경	통제관	전결 2020. 5. 24. 박규웅			
협조자									
시행 인천광역시재난안전다 본부-1796	책 (2020.	5. 24.)	접수 교육협	력담당관-4047	(2020. 5	5. 25.)			
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인천광역시청 (구월동) / http://www.incheon.go.kr/									
전화번호 032-440-7851	팩스번호	032-440-8657	/ misoaci@	@korea.kr	/ 대국민	공개			
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									